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648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8.

발 의 자:서영교·복기왕·김남근

차지호 · 정태호 · 한민수

용혜인 • 박해철 • 김교흥

이해식 • 한정애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불법적인 계엄령 시행 후 국회의원 및 보좌진의 국회 경내 출입이 경찰에 의해 제지되어 문제가 되었음. 국회의원을 보호하고 국회의 기능을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그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 국가에서 도저히 납득하기어려운 상황임.

이에 국회의장이 국회 내 경호 인력 및 국회 밖 경찰 인력의 지휘 권을 갖고 독립적으로 행사하게 하여 국회가 위기상황에서도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144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경위는 항상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고, 경찰공무원은 전쟁, 폭동, 계엄 등 위기상황 발생 시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4조(경위와 경찰관) ① ~ ③	제144조(경위와 경찰관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④ 경위는 항상 국회의장의 지
	휘를 받고, 경찰공무원은 전쟁,
	폭동, 계엄 등 위기상황 발생시
	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다.